

## 한영 특허번역의 품질평가 기준 및 규범에 대한 연구\*

최 효 은  
(이화여대)

### 1. 서론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오늘날 지식재산은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핵심적인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도 세계 각국에서 빈번하게 논의되어 온 삼성전자와 애플의 휴대폰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sup>1)</sup>은 오늘날 지식재산의 중

\* 본고는 필자의 2016년 박사학위논문 「한영 특허 번역 품질 평가 연구 -KPA와 MT의 특징과 기능에 따른 평가를 중심으로」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재구성 및 보완한 것이다. 상기 학위논문의 지도교수는 이지은 교수님(이화여대)이며, 심사위원은 노보경(서울외대), 최미경(이화여대), 신지선(이화여대), 남원준(한국외대), 이지은(이화여대) 교수님임을 밝혀둔다.

1)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및 분쟁’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82%BC%EC%84%B1%EC%A0%84%EC%9E%90%EC%99%80\\_%EC%95%A0%ED%94%8C%EC%9D%98\\_%EC%86%8C%EC%86%A1\\_%EB%B0%8F\\_%EB%B6%84%EC%9F%81](https://ko.wikipedia.org/wiki/%EC%82%BC%EC%84%B1%EC%A0%84%EC%9E%90%EC%99%80_%EC%95%A0%ED%94%8C%EC%9D%98_%EC%86%8C%EC%86%A1_%EB%B0%8F_%EB%B6%84%EC%9F%81), 2016년 6월 13일 검색)

요성 및 지식재산의 국제적인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특허청·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 3).

주요한 지식재산서비스 중 하나인 지식재산번역은 특히 자국 외의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거나 보호받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자국의 첨단 기술을 해외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 출원<sup>2)</sup> 및 이와 관련된 국제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최근의 동향<sup>3)</sup>은 지식재산번역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국내 다수의 지식재산서비스 전문 기업들은 지식재산번역을 향후 핵심적인 사업영역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특허청·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4: 26), 실제로 국내 지식재산번역 사업의 2013년 매출액은 710억 원으로 2011년 대비 매출이 300억 원(73.1%) 증가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36-37). 하지만 이러한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지식재산번역은 지식재산권을 창출 및 보호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서비스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을 뿐 지식재산번역이 독자적인 하나의 분야로 논의되거나 주목받은 적은 거의 없으며 지식재산번역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의 비중 또한 높지 않다(44).

열악한 국내의 지식재산번역 현실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2년으로, 국내 IT 분야의 전문 매체 중 하나인 전자신문이 2012년 7월 18일에 ‘한국특허얼굴 특허영문초록 오류 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sup>4)</sup>를 게재하면서 부터이다. 이

2) ‘출원’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자가 특허청에 일정 서식과 요건을 갖추어 심사를 전제로 권리설정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출처: 『영·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3) 한국 특허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영어를 포함하는 공식 언어로의 번역이 필수적인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 출원 건수가 2008년 7,913건에서 2014년에 13,138건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출처: 한국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41&catmenu=m04\\_05\\_02](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41&catmenu=m04_05_02), 2016년 6월 13일 검색)

4) <http://www.etnews.com/201207180494> (2016년 6월 13일 검색)

기사는 한국어 특허 공보의 요약 부분을 영어로 번역하여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KPA(Korea Patent Abstract, 한국특허영문초록)의 품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사에서 검토한 KPA의 대다수가 기본적인 문법 조차 맞지 않게 번역되어 영어권 독자가 이해하기 힘든 수준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 KPA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특허청은 정작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후 담당 기관인 특허청을 필두로 유관기관들이 협업하여 지식재산번역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KPA의 품질 문제가 대두된 직후 특허청은 지식재산번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번역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는 것과 함께 기술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식재산번역 매뉴얼 작성, 지식재산번역에 대한 평가 체계 구축, 번역물 인증제 도입 등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특허청 · 한국특허정보원 2012: 33). 또한 특허청은 유관기관인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와 함께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지식재산번역의 품질 개선을 위해 지식재산번역능력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부터 IP(Intelle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의 약어) 번역사 자격 검정 시험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1·2·3급에 해당하는 전문 번역사들을 배출하고 있다(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 지금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지식재산번역의 품질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높이 살만 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정책적인 차원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번역 방법이나 번역 품질 기준에 대한 논의는 아직 까지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 특허 관련 기관 및 업체의 가이드라인 조사 및 전문 특허번역사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 특허번역의 품질 및 평가<sup>5)</sup> 기준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특허번역 결과물의 품질 평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본 연구에서의 ‘평가’는 텍스트의 개선 및 교정을 위한 목적으로 완성 전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감수’나 독창적인 성격의 저작물 혹은 문학 번역물에 대해 이루어지는 ‘비평’과 차별되는 개념으로 실용적인 장르의 완결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해당 텍스트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Horguelin & Brunette 1998,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BK21 번역부 자격검정팀 2000: 174 재인용).

이를 위해 첫째, 지식재산번역의 대표 격으로 특허 출원 서류를 대상으로 한 가장 협의의 특허번역(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0: 17)을 중심으로 그 특징에 바탕을 둔 품질평가 기준을 도출한다.

둘째, 이를 기반으로 특허번역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한국어 → 영어 방향의 특허번역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체스터만(Chesterman 1997)이 제시한 규범의 개념 하에 품질평가 기준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소위 ‘규범의 권위자’들이 강조한 특허번역의 품질에 대한 기대 규범을 살펴보고 이에 부합하여 번역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주요 특허번역 전문 업체들이 관리하는 품질평가 항목을 전문가 규범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셋째, 국내에서 한영 특허번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문 번역사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면접조사는 2015년 8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반구조화 방식(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한영 특허번역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특허번역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 특허번역사 10명을 면접조사의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 대상이 속한 기관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내 IP 번역분과를 주도하는 특허번역 전문 업체 3곳, 특허청 및 산하기관, 특허사무소 2곳, 법무법인 내 특허 담당 부서 1곳의 총 8개 기관 및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면접 대상자가 속한 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특허번역이 이루어지는 여러 환경을 포괄하여 가급적 현실성 있고 치우치지 않은 의견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 면접조사를 통해 특허번역의 과정 중 번역 결과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을 분석하고, 특허번역의 기대 규범 및 전문가 규범에 대한 특허번역사들의 의견 및 구체적인 적용 여부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 2. 특허번역의 개념 및 특허번역 품질평가 기준

### 2.1 특허번역의 개념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특허번역을 포괄하는 지식재산번역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문서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번역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문서는 주로 지식재산의 권리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지식재산권이 포괄하는 범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통적 지식재산권에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 간단한 발명인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저작권이 포함된다(윤상원 2014: 11) 또한 신지식재산권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권리 보호의 필요가 대두된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된다(11). 즉, 지식재산번역은 이러한 권리들과 관련해서 출원 서류는 물론이거니와 출원 과정에서 출원인 또는 대리인과 특허청 사이에 오고가는 여러 가지 통지 문서들,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석자료, 법령이나 판례 및 심판 사항, 그 외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 문헌이나 논문, 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포괄적인 지식재산번역의 범위를 정리하면 광의의 지식재산번역은 일국의 언어로 작성된 지식재산에 관련된 제반 문서, 즉 앞서 언급한 다양한 종류의 문서들을 타국의 언어 또는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가리킨다(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 15). 그러나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가장 협의의 지식재산번역은 특허 출원에 필요한 명세서 및 청구범위와 도면의 기재사항을 타국의 언어 또는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가리킨다(15).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가장 협의의 지식재산번역인 특허 출원 서류의 번역을 특허번역으로 정의하고 연구범위를 이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6).

## 2.2 특허번역의 품질평가를 위한 기준

특허번역은 기술번역(technical translation)에 해당하며 나름의 특징을 가지

- 
- 6) 특허번역에 있어서 기계가 번역을 수행하는 기계번역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EU,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기계번역기를 개발하고 기계번역 결과물을 활용하는 추세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9: 6). 실제로 최승권(2007) 등은 번역학의 범주에서 특허 분야의 기계번역 활용을 다룬 바 있다. 한편 본고에서는 특허번역의 범위에서 기계번역을 제외하고 사람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번역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 7) 영어의 형용사 ‘테크니컬(technical)’이 갖는 의미의 중의성 때문에 ‘technical’은 기술(technology)이나 공학(engineering)과 관련된 내용을 가리킬 수 있는 한편 문학번역

고 있는 하나의 장르를 이룬다(Olohan 2015: 156; Wright & Wright 1993: 4). 특허번역이 다른 번역 분야와 차별되는 하나의 장르를 이루는 주된 이유는 특허번역의 대상이 되는 특허 문서에 있다. 특허 문서는 발명의 독창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발명에 대해 기술한 법적 문서(Olohan 2015: 156)로 법적인 성질이 반영된 일종의 기술 문서(technical document)이다. 이러한 특허 문서는 기술과 법률을 포괄하는 전문적인 의사소통의 일종으로 기술 문서의 스펙트럼 내에서 강한 법적·규범적 특징을 지닌 텍스트인 것이다(Göpferich 1998: 90-91, 정수정 2014: 360-61 재인용). 즉, 특허 문서는 기술 문서와 법률 문서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특징을 지닌다(Burk & Reyman 2014: 170). 특허 문서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특허번역 역시 기술번역과 법률번역, 양자의 특징을 모두 가지며 따라서 번역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출발 언어와 도착 언어에 대한 언어 지식 외에 특허법과 관련된 법적 지식과 고도의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Sneddon & Ruplinger 2011; Wang, Wei & Faulkner 2015; 특허청·한국 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0: 25). 이와 같이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특허번역은 기술번역 및 법률번역과 각각 유사한 동시에 이들과 차별되는 독특한 장르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특허번역의 특징이 반영된 품질평가 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기술번역과 법률번역의 성질을 아우르는 특허번역의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기술번역의 한 장르로서 특허번역이 가지는 특징을 바탕으로 한 품질평가 기준을 살펴보고, 이어서 법률번역의 일종으로서 특허번역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에 바탕을 둔 품질평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2.2.1. 기술번역의 특징에 바탕을 둔 특허번역 품질평가 기준

우선 기술번역으로서 특허번역이 가지는 특징을 바탕으로 한 품질평가 기

---

등과 대비되는 특수화된 번역(specialized translation) 또는 특수 목적 언어의 번역(translation of language for special purposes(LSP)) 일체의 소위 ‘전문번역’을 가리키기도 한다(Schubert 2010: 350; Wright & Wright 1993: 1).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전문번역 범주 하에 기술번역을 고찰하되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특허번역이 속한 협의의 기술번역, 즉 기술이나 공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번역으로 한정된 협의의 기술번역 개념을 바탕으로 기술번역을 정의하도록 한다.

준을 살펴보면, 첫째, 원천 언어와 목표 언어의 구사 수준 외에 기술번역에서 번역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문 기술 분야에 대한 주제 지식을 바탕으로 번역 대상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여부이다. 번역사는 자신이 번역하고 있는 텍스트에서 말하고 있는 기술적인 사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Margetic 2012; Olohan 2015: 27). 이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협의의 기술번역뿐만 아니라 기술 문서 외에 다른 여러 전문 분야의 문서에 대한 번역인 광의의 기술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전문 분야의 번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번역사는 원천 언어나 목표 언어의 언어적 규칙이나 구조 외에 해당 문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번역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번역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Galinski & Budin 1993: 209). 특허번역에서는 이와 같은 전문 기술 분야에 대한 주제 지식에 기반을 둔 대상 텍스트의 이해 정도가 다른 기술번역 분야에 비해 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번역 대상 텍스트의 이해 정도는 기술번역으로서 특허번역의 품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이다. 아래의 <예 1>은 이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예 1>

원문: 리튬 이차전지에서, 양극은 양극활물질로서 LiCo3을 포함한다.

오역: In the lithium secondary battery, the anode includes LiCo3 as an anode active material.

바른 번역: In the lithium secondary battery, the cathode includes LiCo3 as a cathode active material. (김천우 2014: 7)

위의 <예 1>은 원문의 ‘양극’을 ‘anode’로 잘못 번역한 사례이다. 실제로 네이버 한영사전을 검색하면 ‘양극’은 ‘anode’로 정의되어 있다<sup>8)</sup>. 이에 대해 김천우(2014: 7)는 번역사가 화학전지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전에 의존해서 번역한 결과 발생한 오역으로 2차 전지의 경우 양극은 ‘anode’가 아니라 ‘cathode’가 옳은 번역이라고 설명한다. 즉, ‘양극’을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8) 출처: 네이버 영어사전

<http://endic.naver.com/krenEntry.nhn?sLn=kr&entryId=bfc6a4aa51d146fe903b532c3cbd66ee&query=%EC%96%91%EA%B7%B9> (2016년 6월 13일 검색)

는 자발/비자발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화학 전지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번역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천우(2014)의 주장이다. 즉, 특허번역사는 사전에 명시된 ‘양극’의 대응어가 ‘anode’인 것을 그대로 옮겨 쓸 것이 아니라 화학 전지에서 ‘양극’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및 화학 전지의 원리에 따라 ‘양극’은 어떠한 개념을 내포하며 따라서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특허번역에서 일반적인 기술 전문 번역사들에 비해 더 높고 엄격한 차원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점을 반영하는 단적인 예이다.

둘째, 주제 지식에 바탕을 둔 이해 수준과 함께 기술번역의 품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기준은 전문용어의 정확한 사용 여부이다. 기술번역의 대상이 되는 여러 장르의 문서들은 해당 전문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전문용어들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물론 용어가 기술 문서를 다른 종류의 문서와 구분하는 유일한 특징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번역 분야에 종사하는 번역사들은 이러한 전문용어를 어떻게 번역할지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Olohan 2015: 36-37). 특히 특허번역에서는 다른 기술번역과 비교해서 전문용어의 중요성이 큰 편이다. 특허번역의 대상인 특허 문서의 경우 전문용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단어 수의 50%에 까지 이를 정도로 전문용어의 비중이 크다(Byrne 2012: 51).

셋째,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 정도 및 전문용어의 정확한 사용 여부와 함께 기술번역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스타일이다. 기술번역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기술번역은 스타일과 무관하다는 인식으로, 기술번역사들에게도 다른 분야의 번역사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언어 및 글쓰기 기술이 필요하다(Byrne 2006: 4). 기술번역에서 요구되는 스타일은 테크니컬 라이팅(technical writing)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한 스타일상의 목표와 상당히 유사하여 명료함(clarity), 간결함(conciseness), 정확성(correctness)을 골자로 한다(Herman 1993: 11). 이러한 기준은 특허 문서 작성 및 특허번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특히 이 중 ‘명료함’과 ‘간결함’은 특허 문서 및 번역 결과물의 스타일을 평가하는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WIPO 1994, Tsai 2014: 56 재인용).

이에 더해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이 외국어를 출발 언어로, 영어를 목표 언어로 하는 기술번역의 경우 목표 언어인 영어로 문장을 얼마나 명료하고 간결하



게 구성하였으며, 영어의 통사적 및 어휘적 특징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문법을 정확하게 구사하여 원문의 내용을 정확한 목표 언어로 전달하였는지의 여부 또한 해당 기술번역의 스타일상 품질을 가늠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Herman 1993: 11).

한편 이와 같은 기술번역의 스타일이 일관되게 모든 기술번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기준, 즉 명료함, 간결함, 정확성을 기본으로 하되 기술번역 텍스트가 속한 세부 장르 및 번역이 이루어지는 목적과 번역이 수행하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스타일을 적용해야 한다(Wright 1993: 69).

본 연구의 대상인 특허번역에서도 장르의 특성상 두드러지는 스타일이 있으며, 특허번역 결과물이 가지는 법적인 성질로 인해 이러한 스타일이 문서 내에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특허번역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요한 스타일을 올로한(Olohan 2015: 161-62, 174-76)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특허 문서에서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162). 대명사를 사용하여 명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명사가 가리켜야 할 명사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모호함을 줄이는 전략(ambiguity-reducing strategy)을 채택하며 이는 다른 기술 문서들과 주요하게 차별 되는 특징 중 하나이다. 둘째, 다른 기술 문서들과 달리 일반화된 기술(generalized description)을 유지해야 한다(175). ‘일반화된 기술’이란 주로 특허 문서에 나오는 용어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지칭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가리켜 기술하는 특허 문서 특유의 독특한 경향을 말하는데, 이는 특허 문서가 다루는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으로 현재 이 개념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어서 일수도 있지만 특허 출원 과정에서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한 기술(description)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175). 이러한 일반화된 표현의 대표적인 예로 발명의 구성요소를 지칭하는 ‘수단’, ‘장치’, ‘시스템’ 등의 어휘를 들 수 있겠다. 특허번역 시 번역사는 원천 텍스트의 이러한 일반화된 표현을 구체화하여 번역할 수 없다. 셋째, 특허 문서에서는 일반적인 영어 문서의 스타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어휘의 다양화(lexical variation)를 사용할 수 없다(176). 즉, 원천 텍스트에서의 반복이 일관되게 목표 텍스트에서도 그대로 동일한 어휘의 반복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 2.2.2. 법률번역의 특징에 바탕을 둔 특허번역 품질평가 기준

지금까지 기술번역의 한 장르로서 특허번역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하게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기준들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법률번역의 일종으로서 특허번역이 가지는 기능을 바탕으로 한 품질평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법률번역으로서 특허번역은 번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정당한 범위 내에서 특허권을 허여함으로써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특허번역은 원문이 담고 있는 특허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주요한 기능으로 한다. 만약 특허번역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잃거나 아예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위험 또한 존재한다(Sneddon & Ruplinger 2011). 이와 같은 특허번역의 특징으로 인해 특허번역에서는 원문이 가지는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특허번역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경우 목표 텍스트의 독자는 목표 텍스트가 번역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개 원천 텍스트와 함께 읽힌다(Olohan 2015: 173).

이와 같이 특허번역이 가지는 법률번역으로서의 기능 및 특징을 고려할 때, 특허번역은 노르트(Nord 2006: 81)의 기능에 따른 번역 유형 중 기록적 번역(documentary translation)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기록적 번역은 원천 문화 발신자가 원천 문화의 조건들 하에서 원천 텍스트를 통하여 원천 문화 오디언스(audience)와 의사소통하는 소통적 상호작용에 대한 일종의 기록을 목표 언어로 생산하는 것을 지향한다(81). 따라서 기록적 번역에서는 가급적 원천 텍스트에 가깝게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특허번역은 노르트가 제시한 기록적 번역의 제 형태 중 축어적 번역(literal translation, Nord 2006: 82-86)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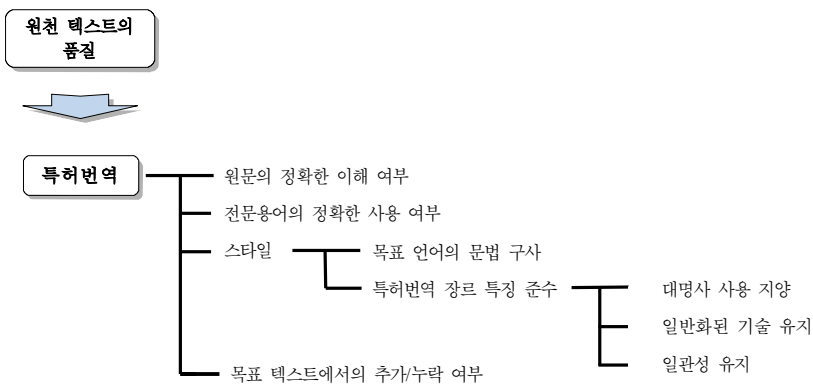
이러한 특허번역의 특징은 두 가지 시사점을 갖는데, 첫째, 특허번역 결과물의 품질은 원천 텍스트 자체의 품질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엄격한 직역을 요구하는 기록적 번역의 성격을 고려할 때 원천 텍스트에 설령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번역사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번역에 있어서 원천 텍스트 자체의 품질이 가지는 중요성은 지난 2014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오영식 국회의원은 특허번역시 국문 문서 자체의 내용 및 용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이를 바로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 내용 전달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원

천 텍스트인 국문 문서의 검수를 우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sup>9)</sup>.

둘째, 특허번역 과정에서 번역사가 임의로 원천 텍스트의 내용 중 일부를 추가하거나 누락할 수 없으며 가능한 한 원천 텍스트에서 작성된 어휘와 통사 구조까지도 그대로 옮겨 와야 한다(Olohan 2015: 173). 원천 텍스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원천 텍스트의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 출원시 추가 또는 누락된 부분으로 인해 수리 관청으로부터 출원 서류가 거절될 수 있으며 권리 확보 후에도 해당 부분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거나 권리가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번역의 하위 장르로서 특허번역의 특징 및 법률번역의 일종으로서 특허번역이 가지는 기능에 바탕을 둔 품질평가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특허번역의 품질평가 기준



9) 201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중 2014년 10월 7일자 ‘특허영문초록 감수대행, 한글요약 검수 우선해야’  
(출처: 오영식 의원 공식 홈페이지 <http://ohys.tistory.com/m/post/482>, 2016년 6월 13일 검색)

### 3. 특허번역의 품질에 대한 기대 규범 및 국내 특허번역 업체의 전문가 규범

특허번역의 전반에 대한 연구는 현재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실무 분야를 제외한 학계에서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따라서 특허번역의 품질을 가늠하는 평가 기준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앞 장에서는 특허번역의 특징 및 기능을 고려하여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품질평가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제 본 장에서는 체스터만(1997)이 제시한 규범의 개념 하에 특허번역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큰 한국어 → 영어 방향의 번역을 중심으로 실제로 특허업계에서 중요하게 적용하는 품질평가 기준을 고찰하는 동시에 앞서 도출한 품질평가 기준을 재확인하도록 하겠다.

체스터만(1997)의 규범을 연구에 적용하고자 한 이유는 특허번역이 실무 번역 중에서도 특수한 환경 내에서 제한적인 독자와 평가자를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체스터만(1997: 64-70)이 제시한 규범의 개념이 이러한 장르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체스터만(1997: 64-70)이 제시한 기대 규범(expectancy norms)과 전문가 규범(professional norm)은 실무 번역의 환경에서 번역물의 독자, 평가자, 번역을 실제로 수행하는 번역사들이 번역 및 품질관리 과정에서 염두에 두는 번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 및 규범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번역물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구체적으로 체스터만의 기대 규범은 주어진 유형의 번역물을 읽는 독자가 이런 유형의 번역은 어떠해야 한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목표 문화에서의 지배적인 번역 전통, 목표 언어의 유사한 장르에서 준수하는 담화 관습, 경제 및 이데올로기적 요인 등이 있다(Chesterman 1997: 64). 또한 교사나 문학 비평가, 번역 비평가, 출판사 등 사회로부터 그러한 기대 규범을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규범의 권위자(norm-authority)’가 기대 규범의 정당성을 입증하기도 한다(66).

체스터만은 기대 규범과 함께 실제 번역 과정을 관장하는 전문가 규범(professional norms)을 제시하였는데, 이 규범은 기대 규범의 하위 범주에 속하며 책무 규범(accountability norm), 소통 규범(communication norm), 관계 규범

(relation norm)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책무 규범은 무결성(integrity)과 철저성(thoroughness)에 대한 직업적 기준으로 의뢰인과 독자에게 자신의 번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윤리적 규범이며, 소통 규범은 번역자가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사회적 규범이고, 관계 규범은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간의 적절한 관계를 정하는 언어적 규범이다(Chesterman 1997: 67-70). 특히 언어적 규범인 관계 규범에서 체스터만은 번역사가 텍스트의 유형, 의뢰인의 요구사항, 원저자의 의도, 예상 독자가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69)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 간의 적절한 관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협의의 등가 관계를 기각하는 한편 실제 번역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물에 대한 기대 및 이에 부합하여 좋은 품질의 번역물이 산출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개념 하에 아래에서는 우선 특허번역에 있어서 번역 결과물을 비롯한 출원 서류를 수리 및 검토하여 특허권을 허여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국내외 주요 수리 관청을 ‘규범의 권위자’로 하여 이들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심사 지침 및 번역 가이드라인에서 나타나는 번역 규범을 기대 규범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어 본 연구의 대상인 한영 특허번역을 실제로 수행하는 국내 주요 특허번역 전문 업체들이 기대 규범을 충족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전문가 규범에 대해 업체들이 제시한 품질 관리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3.1 특허번역의 품질에 대한 기대 규범

한영 특허번역의 품질에 대한 기대 규범을 제시할 수 있는 ‘규범의 권위자’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특허청(정식 명칭은 ‘미국특허상표청’으로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USPTO)라 함)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그리고 한국 특허청을 선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미국 특허청의 심사 지침서인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MPEP)’, WIPO의 『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Policy, Law and Use』(2004)와 『Guidelines for the Translation of PCT Application Abstracts』(2012), 그리고 한국 특허청의 『지식재산번역 가이드라인』(2010)을 통해 기대 규범을 도출하였다.

국내외의 여러 특허 관련 주요 기관들 중 이 세 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선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특허 출원 건수가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으며(WIPO 2014: 12)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어 → 영어 특허번역 중 목표 언어인 영어를 모국어로 한다. 또한 한국에서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어 해당 국가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의 주요 대상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특허번역에 있어서도 미국 특허청의 MPEP를 주로 참조한다. 한편 WIPO는 전 세계의 특허 출원을 관장하며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 조약)<sup>10)</sup> 출원의 수리 관청이다. 또한 PCT 출원에 대해 영문 초록을 제공하고 있어 WIPO의 초록 번역 및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초록 번역뿐만 아니라 영어로의 특허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참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이 두 기관이 ‘규범의 권위자’라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한국 특허청은 비록 한영 특허번역 결과물의 목표 독자는 아니나 KPA의 품질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영 특허번역의 품질을 관리하는 국내 최상위 기관이라는 점에서 한영 특허번역에 있어서 ‘규범의 권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본 연구 대상의 목표 언어인 영어로 작성하는 출원 서류에 대해 미국 특허청의 MPEP는 37 CFR 1.71에서 출원 서류에는 발명의 내용이 충분하고 분명하며 간결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해당 서류를 보고 내용을 이해하여 해당 발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WIPO 역시 MPEP의 지침과 유사하게 출원 서류에는 다루고자 하는 발명이 충분히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WIPO 2004: 22). 즉, 이들의 지침이 강조하

10) 특허독립, 즉 속지주의 원칙상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다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 출원이 필요하며, 해외 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 방법과 PCT 국제 출원 방법이 있다. 오늘날 해외 출원은 대부분 PCT 국제 출원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pct.info.BoardApp&c=1001&contentID=info0111&catmenu=m07\\_01\\_01](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pct.info.BoardApp&c=1001&contentID=info0111&catmenu=m07_01_01), 2016년 6월 13일 검색)

는 규범은 결국 내용의 정확성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가독성<sup>11)</sup>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지침이 특허번역의 대상이 되는 출원 서류의 작성에서 강조되는 규범이라면 특허번역, 특히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이 영어로의 특허번역에서 요구되는 규범은 WIPO의 『Guidelines for the Translation of PCT Application Abstracts』(2012)와 한국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와 함께 발간한 『지식재산번역 가이드라인』(2010)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WIPO(2012: 4)는 출원 서류의 주요한 부분인 특허 초록의 한영번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번역 결과물은 내용이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되어야 하며 동시에 번역사는 다양한 배경의 독자들이 각자가 가진 관련 지식의 유무 및 정도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초록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앞서 출원 서류를 작성할 때 요구되는 정확성과 가독성이 특허번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특허 초록에 한정하는 경우 가독성의 수준이 일반인이 이해 가능한 정도로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0) 또한 특허번역을 비롯한 지식재산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문어의 충실성<sup>12)</sup>으로 원문의 용어를 번역사가 임의로 바꾸거나 오역하지 말 것을 강조하여 원문의 내용을 번역사 마음대로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역하여 옮길 것을 당부한다(31). 이와 함께 원문의 의미를 명료하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여 심사관, 심판관 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하여 원문의 의미를 번역문에서 충실하게 살려서 번역할 것을 요구함으로써(31) 앞서 WIPO(2012)와 크게 다르지 않은

11) 본 연구에서는 활자체, 글자 간격, 행간에 따른 가독성(legibility, DuBay 2004: 3)의 범위를 제외하고 인쇄물이 얼마나 쉽게 읽히는가의 정도에 따른 가독성(readability)을 그 개념으로 한다.

12) 미국 특허청과 WIPO가 제시한 정확성은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2005)에서 정의한 충실성의 하위분류인 정확성과 같은 개념으로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2005: 22)은 정확성에 위배되는 부정확은 ‘원문의 단어나 구절, 문장의 원의와 동떨어진 번역’으로 정의했다. 한편 한국 특허청은 정확성의 상위 기준인 ‘충실성’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설명하였으나 결국 이는 미국 특허청 및 WIPO의 정확성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 판단하였다.

정확성과 가독성의 두 가지 기대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확성과 가독성의 두 가지 기대 규범은 사실 번역품질평가에서 번역의 장르나 특징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평가 기준이다. 이러한 기대 규범은 특히 그 역사가 비교적 오래되었으며 무엇보다 평가 기준이 체계적으로 구축된 편인 문학번역 분야에서 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평가 기준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문학번역에 대한 비평을 연구한 전현주(2008: 137-38)는 상기의 두 가지 기준이 번역 텍스트의 내적인 용인성과 관련된 것으로 정확성은 충실성과 함께 원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평가 기준이며, 가독성은 목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평가 기준임을 명시하였다. 전현주(2008: 167)는 이러한 번역 텍스트의 내적인 용인성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으로 어휘 · 의미 · 통사 · 화용적인 기준 및 기타 기준을 꼽았다.

먼데이(Munday 2001/2008: 30-32) 역시 이 두 가지 기대 규범 중 ‘정확성’과 관련해서 영국 The Institute of Linguists의 ‘Diploma in Translation’ 번역 평가 기준과 UNESCO의 ‘Guidelines for Translators’에서 수차례 반복되는 주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정확성’인 점을 예를 들면서, 초기 번역 이론에서 등장하는 모호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용어가 현재까지도 번역의 평가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한편 한영 특허번역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정확성과 가독성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일한 비중의 중요성을 지니는 규범이 아니라 정확성의 중요성이 가독성에 비해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확성과 가독성 논의와 차별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특허번역에 있어서 정확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특허번역이 가지는 법률번역으로서의 기능에 있다. 해외 출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특허번역은 결국 해당 국가에서의 특허 등록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마침표(.)를 찍는 위치까지도 원문과 비교해 틀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특허 적용 범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특허번역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sup>13)</sup>.

이와 같이 상당히 엄격한 수준으로 요구되는 정확성에 반해 가독성의 비중

13) IP 노믹스 2015년 11월 13일자 ‘IP 번역, ‘점’ 하나에 美 특허 등록 좌우’  
(출처: <http://www.ipnomics.co.kr/?p=32247>, 2016년 6월 13일 검색)



이 낮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앞서 특허번역의 기능에서 언급한 원천 텍스트의 품질과 특허번역 결과물의 주요한 독자층과 연관이 있다. 우선 특허번역은 그 기능상 엄격한 축어적 번역을 요구하기 때문에 번역의 품질이 원천 텍스트에 의해 좌우되는 정도가 크며, 특허 문서의 특성상 원천 텍스트의 가독성 자체가 좋지 않고 번역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번역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 또한 WIPO(2012)의 경우 특허번역을 초록 부분에 한정할 경우 예상 독자를 특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까지 포함해서 상정하여 기대 규범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특허번역 결과물을 참조하는 독자의 대부분은 특허업계 또는 관련 분야의 종사자로 MPEP, WIPO(2004) 등에서 언급된 발명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 지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특허 문서 특유의 장르 관습에 익숙하다. 따라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가독성이 매우 낮을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관련 분야 지식을 갖춘 독자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정확성과 가독성의 이러한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아래 4장에서 상술할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 3.2 국내 특허번역 업체의 전문가 규범

앞서 살펴본 소위 ‘규범의 권위자’들이 제시한 비교적 추상적인 기대 규범인 정확성과 가독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따라야 하는 실제 특허번역 업체들은 기대 규범에 부합하는 품질의 특허번역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준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특허 전문가 규범 하에 실제로 번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번역물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실제로 번역을 수행하는 업체들이 관리하는 항목을 전문가 규범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한영 특허번역에 대한 전문가 규범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에서 특허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를 분석하여 번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품질 관리 및 평가 항목들을 조사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본고에서 적용한 체스터만(1997)의 전문가 규범은 책무 규범, 소통 규범, 관계 규범의 세 가지 하위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해 본 절에서 살펴볼 특허번역 전문 업체들이 번역 과정에서 주요하게 관리하는 항목들은 주로 언어적 규범인 관계 규범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의 대상으로 삼은 특허번역 전문 업체는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업의 활성화 및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KAIPS)<sup>14</sup> 내 IP 번역분과에 등록된 11개 업체<sup>15</sup>로, 여러 분야의 번역과 특허번역을 구분 없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번역 에이전시를 제외하고 특허번역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했다. 특허번역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이 11개 업체의 경우 번역 업무의 대부분이 본 연구에서 한정된 가장 협의의 특허번역에 속하는 명세서를 비롯한 특허 출원 관련 문서이므로 이들의 번역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번역 품질에 대한 전문가 규범을 확인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IP 번역분과에 등록된 11개 업체 중 홈페이지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디에스번역과 코리아특허번역,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세 곳을 제외한 최종 8개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8개 업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각 홈페이지에 게시된 번역 과정을 살펴보고 번역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을 검토 및 감수<sup>16</sup>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막연하게 ‘좋은 품질을 지향한다’ 등의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들은 제외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살펴보는 구체적인 항목이 제시된 경우만을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14)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kaips.or.kr/>

15) 다산아이피앤아이, 미래특허정보컨설팅, 아이피사람과기술, 제세, 케이피에스, 도원닷컴, 디에스 번역, 메카 IPS, 지온컨설팅, 코리아특허번역,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11개 업체이다.

(출처: <http://www.kaips.or.kr/part.do?method=pt013>, 2016년 6월 13일 검색)

16) 특허번역 업체들의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케이피에스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검토와 감수는 일관되게 다음의 정의로 사용되었다. ‘검토’는 변리사 및 선임 변리사와 같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국문 내용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감수’는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 감수자가 영어 표현을 위주로 번역물을 체크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한편 케이피에스는 ‘검토’와 ‘감수’의 구분 없이 모두 일관되게 ‘감수’로 표현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다른 업체들과의 통일성을 위해 앞선 정의에 따라 ‘검토’와 ‘감수’를 구분해서 정리하였다.

17) 이들 업체에서 수행하는 번역 대부분이 한국어 → 영어 번역이어서 이 목표 언어는

〈표 1〉 특허번역 업체들이 번역 과정에서 확인하는 주요 항목들

No.	특허번역 업체	홈페이지	주요 확인 항목
1	다산아이피앤아이	www.dasantech.co.kr	언급 없음
2	미래특허정보컨설팅	www.patent-trans.com	1. 목표 언어 <sup>17)</sup> 표현(원어민 감수자 감수) 2. 누락 체크(omission check) 3. 정확성 여부(선임 번역사 검토)
3	아이피사람과기술	www.humantk.com	1. 목표 언어 표현(원어민 감수자 감수)
4	제세	www.jesetran.co.kr	1. 용어의 일관성 2. 용어의 오용 3. 오타 4. 오역 5. 원문 누락 여부 6.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 7. 목표 언어 표현 - 고급 현지 언어
5	케이피에스	www.kps.seoul.kr	1. 내용의 정확성 확인(전공자 검토) 2. 누락 체크(전공자 검토) 3. 목표 언어 표현(원어민 감수) 4. 용어 5. 스타일 및 서식 6. 법규합치여부 7. 기타 자체 체크리스트, 고객 요청 사항, 번역 메모
6	도원닷컴	www.dowon.com	1. 오타자 2. 표현의 명확성(원어민 감수) 3. 문법의 정확성(원어민 감수)
7	메카 IPS	www.mecatrans.com	1. 문법(원어민 감수) 2. 논리성(원어민 감수) 3. 용어 검수(원어민 감수) 4. 기술 내용(제휴 변리사 검토) 5. 용어 검수(제휴 변리사 검토)
8	지온컨설팅	www.zeoncon.com	언급 없음

‘영어’일 가능성이 높으나 업체들 대부분이 반대 방향인 영어 → 한국어를 비롯해서 다양한 언어 조합의 번역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모두 영어로 간주하는 데는 무

위의 <표 1>을 종합하면, 특허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위의 업체들은 기대 규범을 충족하기 위해 번역 과정에서 내용의 정확성<sup>18)</sup>, 용어, 누락 여부, 목표 언어 표현, 문법, 오타자 등의 항목을 주로 확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목표 언어의 표현과 문법은 주로 원어민이, 그리고 내용의 정확성 및 용어나 누락 여부는 전공자, 선임 번역사 또는 제휴 변리사가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이 확인하는 주요 평가 항목들을 특허번역의 관계 규범에 해당하는 전문가 규범으로 간주하여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특허번역의 주요한 전문가 규범

한영 특허번역에 대한 기대 규범	특허번역 업체들의 전문가 규범
정확성	내용의 정확성
	용어의 정확성
	누락 여부
가독성	용어의 일관성
	목표 언어의 표현
	목표 언어의 문법
	표기 및 오타자
	스타일, 서식 및 기타 체크리스트

이러한 규범은 앞서 문헌을 통해 도출한 한영 특허번역의 품질평가 기준과도 일맥상통하며, 이 둘을 비교 및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한영 특허번역의 품질평가 기준 vs. 특허번역 업체들의 전문가 규범

한영 특허번역의 품질평가 기준	특허번역 업체들의 전문가 규범
원문의 정확한 이해 여부	내용의 정확성
전문용어의 정확한 사용 여부	용어의 정확성

리가 있어 목표 언어로 표현했다.

- 18) <표 1>의 주요 확인 항목 중 동일하게 ‘내용의 정확성 확인’으로 명시한 кей피에스의 확인 항목 외에 정확성 여부, 오역, 기술 내용이 내용의 정확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스타일 합치 여부	용어의 일관성
	목표 언어의 표현
	목표 언어의 문법
	표기 및 오타자
	기타 스타일, 서식 및 체크리스트
목표 텍스트에서의 추가/누락 여부	누락 여부

지금까지 한영 특허번역이 속한 기술번역의 특징 및 특허번역 장르의 특징과 특허번역의 기능을 기반으로 한 주요한 품질평가 기준을 도출하였으며, 이 품질평가 기준에 대해 소위 ‘규범의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미국 특허청, WIPO 및 한국 특허청이 제시한 기대 규범 및 국내에서 특허번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허번역사 집단이 제시한 전문가 규범, 좀 더 정확하게는 관계 규범을 바탕으로 번역 결과물에 대한 규범뿐만 아니라 번역 과정에서 중시되는 품질 관리의 항목들을 분석하여 앞서 도출한 품질평가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 4. 특허번역사 면접조사를 통한 특허번역 품질 및 규범 고찰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전문 한영 특허번역사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 비교적 알려진 바가 없는 한영 특허번역의 과정을 고찰하여 한영 특허번역의 특징이 품질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 앞서 도출한 한영 특허번역의 품질평가 기준 및 규범과 비교하여 실제로 전문 특허번역사들이 가지고 있는 한영 특허번역 품질평가 기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면접조사는 아래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문 한영 특허번역사 10명을 대상으로 2015년 8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하였다. 가급적 면대면 방식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면대면 방식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면접조사 질문지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주고받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면접조사 질문 방식은 일정한 수의 질문을 표준화하고 그 밖의 질문은 비표준화하는 반구조화 면접을 사용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 및 설명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4〉 면접조사 대상 및 면접조사 방법

응답자	소속	직책/ 담당 업무	경력	성별	면접조사 방식
1	프리랜서 <sup>19)</sup>	번역사/ 번역(명세서 번역)	10년	여	면대면
2	특허법인 A	부장/ 번역 및 검수 (명세서 번역)	명세서 20년/ 번역 2년	남	면대면
3		과장/ 번역(명세서 번역)	10년	남	면대면
4	특허법인 B	번역사/ 번역(명세서, OA 문서 번역)	10년	여	서면/전화
5	특허번역 업체 A	팀장/ 업무 분장, 검수, 번역	30년	남	면대면
6	특허번역 업체 B	대표/ 업무 수주, 검수, 번역사 교육 등	25년	남	면대면
7	특허번역 업체 C	대표/ 업무 수주, 최종 검수 (영문, 기술 모두)	20년	남	면대면
8	법무법인	대리/ 번역(명세서 번역)	3년	여	서면/전화
9	정부 특허 기관 A	사원/ 번역(KPA 번역)	1년 <sup>20)</sup>	여	서면/전화
10	정부 특허 기관 B	에디터/ 검수(PCT 서류 및 KPA 검수 및 평가)	5년	여	서면/전화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1) 특허번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 (2)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특허번역의 기대 규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3) 기대 규범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로 전문가들이 적용하는 전문가 규범이다.

#### 4.1 특허번역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품질

‘특허번역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품질’에서는 그 특수성에 비해 비교적 알려진 바가 적은 특허번역의 과정을 살펴보고 특허번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품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특허번역사의 배경, 원천 텍스트 자체의 품질, 한영 특허번역의 비용이 한영 특허번역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파악되었다.

첫째, 특허번역사의 배경과 관련된 주요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응답자 5:** “보통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번역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공이 아닌 사람은 일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일을 하는 게 위험하기도 하구요. 예를 들어, 한글 원문을 작성하는 드래프터(drafter)가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오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공자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비전공자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전공자는 번역 단계에서 필터링이 가능한데 비전공자는 그렇지 못하죠.”

**응답자 7:** “특허번역사의 90%가 이공계 출신이며 나머지 10%가 영문학 전공 및 일부 통번역대학원 출신이 있습니다. 인문계에서는 영문학 전공이 유일합니다. 특허번역사 대부분이 이공계열 전공에 영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 19) 응답자 1은 다른 면접조사 대상자들과 달리 현재 구체적인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특허번역사다. 하지만 한영 특허번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력이 길다는 점, 총 경력의 절반 이상은 특허사무소 및 특허번역 전문 업체에서 근무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여러 특허번역 전문 업체에 등록된 프리랜서로서 활발하게 특허번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면접조사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 20) 응답자 9는 다른 면접조사 대상자들에 비해 경력이 짧으나 대표적인 한영 특허번역의 사례라 할 수 있는 KPA의 번역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KPA의 번역을 전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면접조사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특허번역사의 배경과 관련해서 특허번역사의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의 전공자로 특허 문서가 다루는 기술적이거나 공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다. 한편 단순히 이학 또는 공학의 전공자이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전자, 화학, 기계 등 번역사의 세부 전공까지 고려해서 번역을 배당함으로써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당한 특허 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번역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특허 전문 번역사들의 이러한 배경은 기술번역에서 중시되는 기술 내용에 대한 이해와도 일맥상통한다. 기술번역의 주요한 장르 중 하나인 특허번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문의 전문적인 기술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번역사의 인지적 요소 및 배경 지식이 번역 수행에 있어서 주요하게 요구되는 요소다. 한편 다른 분야의 전문번역에서 해당 목표 언어를 전공한 자 또는 통역과 번역을 전공한 자들이 주로 번역사로 활동하는 것과 확연하게 차별되는 이와 같은 특징은 목표 언어의 문법이나 표현과 같은 스타일상의 문제에 있어 취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원천 텍스트 자체의 품질에 대한 주요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응답자 6:** “특허 문서의 경우 원문의 가독성 자체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문서를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죠. 하지만 전공자가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천 텍스트의 품질 역시 전체 특허번역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응답자 중 번역사의 전공이 반드시 관련 분야의 이공계이어야 함을 강조한 전문가는 원문인 국문 특허 문서의 작성자가 원문에서 오류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즉, 원문이 잘못 작성되었을 때 그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해당 기술에 대해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특허 문서의 품질은 관련 문헌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는데, 일례로 류상민과 김유철(2015: 서문)은 번역 대상이 되는 국문 특허 문서의 표현은 작성자의 국어 실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심한 경우 주어 동사가 없는 표현도 허다하기 때문에 이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특허번역사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원천 텍스트 자체의 품질 문제는 ‘기록적 번역’에 해당하는 특허번역에 있어서 품질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셋째, 특허번역의 비용 문제와 관련된 답변은 아래와 같다.

**응답자 7:** “특허번역은 저평가되어 있어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sup>21)</sup> 원어민 감수를 빼기도 합니다. 현재 사건에 따라 원어민 감수를 수행하는 편입니다.”

**응답자 2:** “원어민은 영어 표현을 감수하는 정도입니다. 영어 표현보다는 발명이 중요하고, 영어 표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심사관이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응답자 4:** “원어민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내용이 올바르게 영역되었는지 오역은 없는지, 코멘트상 틀린 부분이 없는지를 잡아내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영 특허번역의 비용 또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한영 특허번역은 그 난이도에 비해서 번역료가 저렴한 편으로 일부 응답자의 답변에 의하면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은 한국어 → 영어 번역의 경우 A4 1장당 25,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낮은 번역료는 우선 실력이 있는, 즉 특허번역에 적합한 기술 지식과 번역에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모두 갖춘 경쟁력 있는 번역사의 진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낮은 요율은 원어민 감수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특허번역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난이도 및 전문성과 상관없이 목표 언어인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정도면 특허번역의 감수자로서 그 자격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 응답자 7이 속한 특허번역 업체 C의 브로슈어를 보면 특허번역 요율과 관련해서 한국어 → 영어 특허번역은 결과물 기준 A4 1장 25라인에 25,000원이며, 영어 → 한국어 특허번역은 결과물 기준 A4 1장 20라인에 15,000원이다. 번역 요율과 관련해서 앞서 살펴본 8개 특허 전문 번역 업체들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8개 회사 중 다산아이피엔아이, 도원닷컴, 제세의 세 곳에서 번역 요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요율은 응답자 7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A4 1장 기준으로 한국어 → 영어 특허번역은 24,000원 ~ 28,000원 선이었고, 영어 → 한국어 특허번역은 14,000원 ~ 15,000원 선이었다.

#### 4.2 특허번역의 기대 규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앞서 체스터만(1997)의 기대 규범에 착안하여 특허번역에 있어서 소위 ‘규범의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미국 특허청, WIPO, 한국 특허청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확성’과 ‘가독성’의 두 가지 기대 규범을 도출한 바 있다. 한편 이 두 가지 기대 규범은 특허번역이 속한 기술번역뿐만 아니라 문학번역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되는 두 가지 평가 규범이며 이 외에 일반적인 번역 평가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특허번역의 기대 규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에서는 특허번역사들이 이 두 가지 규범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및 특허번역에서는 이 보편적인 기대 규범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우선 아래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번역 역시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정확성과 가독성의 평가 기준을 주요하게 도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 4:** “특히 특허 분야에서 정확성과 가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실하게 번역하면서도 오역이 없어야 하며, 상대방을 쉽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독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 9:** “(KPA 번역과 관련해서) 현재에도 검수파트에서 검수하는 요소 중 내용에서 정확성과 가독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감수위원 평가 또한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특허번역의 품질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이미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다음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번역에서는 정확성과 가독성이 같은 비중을 가지기 보다는 정확성이 가독성에 비해 그 중요도가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응답자 6:** “단연코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특허 문서가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전공자가 보면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정확성이 높아지면 가독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문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원문을 번역사가 맘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응답자 8:** “특허번역 시 일대일 대응으로 번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기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번역이므로, 번역자가 가독성을 위하여 임의로 문장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성이 가독성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한글로 된 특허 문서 자체가 가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영 번역에서 가독성을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응답자 1:** “특허번역의 가독성은 업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도면 됩니다.”

**응답자 4:** “특허법에도 나와 있듯이 당업자들이 특허 명세서를 보고 쉽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면 됩니다....(중략)

한영 특허번역 평가 기준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을 정리하면, 한영 특허번역 전반에 있어서 정확성과 가독성은 분명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하지만 두 기준의 비중을 따지면 한영 특허번역에 있어서 더 중요한 기준은 정확성이다. 법적인 권리가 걸린 문서이니만큼 원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감 없이 번역하는 것이 그 어떤 다른 종류의 문서보다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가독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1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sup>22)</sup>를 비롯해서 특허 문서 특유의 독특한 글 스타일에 익숙한 업계 관계자가 읽고 이해할 정도면 충분하다. 또한 원문의 가독성 자체가 좋지 않은데다가 이를 번역사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재량이 허락되지 않고 가독성까지 신경 써서 번역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독성은 정확성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 4.3 특허번역의 전문가 규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마지막으로 ‘특허번역의 전문가 규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에서는 기대 규범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로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전문가 규범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면접조사에서는 체스터만(1997)이 제시한 전문가 규범의 세 가지 하위 규범인 책무 규범, 소통 규범, 관계 규범을 기준으로 특허번역사들의 인식을 고찰하고자 했다.

22) 특허업계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당업자’라 칭한다.

첫째, 윤리적 규범인 책무 규범과 관련해서 면접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특허번역이 가지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번역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의뢰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단계의 확인 과정을 거쳐 품질의 무결성을 추구하고 납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Chesterman 1997: 76). 이와 관련된 주요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응답자 5:** “보통 특허사무소가 번역사무소에 의뢰 → 스케줄 → 스케줄 회신 및 확정 → 번역 담당자를 정함 → 1차 번역문 완성 → 원어민 감수자가 감수(proofreading) → 번역자 최종 수정 → 의뢰인에게 납품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응답자 6:** “초벌번역 → 원어민 감수(전수) → 누락 체크(워드별) → 번역사에게 피드백 → 번역사가 수정본 작성 → 선임(senior) 번역사의 크로스 체크 → 번역사 수정본 작성 → 오타자, 문단 체크 → 납품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응답자 7:** “명세서의 기본적으로 발명자, 즉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허법인은 명세서의 작성을 대리해서 출원인이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고, 저희와 같은 번역사는 이러한 권리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거죠. 따라서 명세서를 번역할 때에는 혹시나 명세서의 내용이 잘못되거나 번역 과정에서 잘못이 생겨 출원인이 원래 의도한 권리를 받지 못하면 큰일입니다...(중략)”

둘째, 사회적 규범인 소통 규범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번역자와 참여자 간 의사소통을 극대화하여 번역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원문 작성자인 변리사나 명세서, 원 발명자를 비롯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응답자들은 원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지식 및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 나가면서 번역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특허번역의 원문인 특허 문서의 품질이나 가독성이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특허번역사들은 불명확한 원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원 문서 작성자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경향을 보였다(Chesterman 1997: 77). 이와 관련된 주요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응답자 4:** “저희는 단독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리사가 써 준 코멘트 등을 바탕으로 영역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 변리사와 상의해서 영역합니다.”

**응답자 6:** “... 국문 명세서를 작성한 사람이 발명의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명세서를 작성한 경우거나 명세서가 잘못된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한해 명세서를 작성한 담당자 또는 필요한 경우 발명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적 규범인 관계 규범과 관련해서 앞서 문헌연구를 통해 기술번역의 한 장르로서 특허번역에서 품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평가 기준을 살펴 보았고, 이에 대해서 실제 전문 특허번역 업체들이 기대 규범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하는 전문가 규범을 관계 규범 위주로 고찰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영 특허번역에서 주요한 평가 기준이자 전문가 규범 중 관계 규범을 ‘원문의 정확한 이해 여부’, ‘전문용어의 정확한 사용 여부’, ‘스타일 합치 여부’, ‘추가/누락 여부’의 네 가지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문헌연구의 이러한 결과를 면접조사 대상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각 전문가들이 실제로 특허번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품질 관리를 위해 검토하는 항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면접조사 응답자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것은 ‘기술 전문용어의 정확한 사용’으로 정확한 전문용어의 사용이 특허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주요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응답자 2:** “용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특히 전문용어는 사실 comprise 같이 한정적이어서 용어라고 얘기를 하면 기술과 관련된 전문용어입니다. 청구범위에 사용한 comprise 등은 요약에서 사용하면 안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약은 주요한 청구 범위를 따다 놓은 것이나 용어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기술 전문용어가 가장 중요하죠.”

**응답자 9:** “(KPA를) 검수 및 감수하는 세 차례의 과정—검수파트의 검수, 평가위원의 검수, 특허청의 검수—에서 공통적으로 기술 용어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응답자 10:** “전문 기술 용어의 일관적이고 정확한 사용이 주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주요하게 꼽은 항목이 ‘추가/누락 여부’였다. 응답자 대부분이 특허번역에서 추가와 누락은 모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밝혔다. 주요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응답자 1:** “추가/누락이 있을 수 있으나 잘못하면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중략)... 재관할 때 증거로 제출이 되거나 하면 이게 어떤 문서든지 간에 샅샅이 보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응답자 4:** “특허 문서의 번역을 참고하여 권리범위 확인 및 침해 관련 소송이나 문의/감정을 요청하는 해외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아주 작은 내용의 추가나 누락이 특허 권리의 해석을 달리할 수 있게 되어 특허권의 효력이나 방어에도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특허 문서 영역에 있어서는 단어 선택만큼이나 추가/누락 부분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또 다른 항목은 특허 문서 특유의 ‘긴 문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번역’이다.

**응답자 6:** “특허 문서는 원문이 장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그대로 번역해서 한국어를 그대로 잘라 구겨 넣으면 영어로는 말이 안 되겠죠.”

이와 같은 특허 문서의 특징은 한영 특허번역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천 텍스트의 품질과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길고 복잡한 문장은 원문에 대한 이해를 저해하고 따라서 부정확한 번역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문의 긴 문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답자 대부분은 문장을 분절하여 번역함으로써 목표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번역사가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영 특허번역에서 주요하게 요구되는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원문의 정확한 이해 여부’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 1:** “원문의 문장이 너무 길 경우는 잘라서 번역하는게 맞습니다. 가독성을 높이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한영 번역에서는 문장을 잘라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응답자 5:** 영어 번역된 문장이 길면, 예를 들어 한 페이지가 한 문장일 때 정말 안 좋은 번역이죠. 원문에서 한 페이지가 한 문장이라고 하면 이걸 잘라서 번역을 해야죠. 원문을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잘라야 한다고 생각 하고, 똑같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은 일관성과 문법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는 앞서 문헌 연구에서 살펴본 스타일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겠다. 특히 특허번역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일관성은 앞서 문헌연구의 전문가 규범을 통해 확인한 바 있는 용어 수준의 일관성이었으며, 언어 전문가보다는 기술 전문가들이 주로 번역사로 활동하는 업계의 특성상 문법 또한 강조되는 부분이였다.

## 5. 결론

지금까지 문헌연구와 특허 관련 기관 및 업체의 가이드라인 조사 및 전문 특허번역사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 특허번역의 품질 및 평가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기술번역의 일종인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특허번역의 품질은 크게 주체지식을 바탕으로 한 원문의 정확한 이해 여부, 전문용어의 정확한 사용 여부, 목표 언어의 스타일 합치 여부, 목표 텍스트에서의 추가 또는 누락 여부로 가늠할 수 있다. 그 범위를 특허번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어 → 영어 방향의 번역으로 한정해서 고찰한 결과, 한영 특허번역의 주요한 평가자들인 미국 특허청, WIPO, 한국 특허청은 ‘정확성’과 ‘가독성’이라는 번역에서 흔히, 또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온 두 가지의 일반적인 규범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기대 규범을 충족하기 위해 전문 한영 특허번역사들은 기본적으로 특허번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자신의 번역에 책임을 저

야 하는 책무 규범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번역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번역 과정에서 의뢰인을 비롯한 다양한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전문가 규범의 언어적 규범인 관계 규범과 관련해서 앞서 도출한 원문의 정확한 이해, 전문용어의 정확한 사용, 용어/단어의 일관성과 문법을 하위분류로 하는 스타일 합치, 목표 텍스트에서 추가 및 누락 불가의 네 가지 기준을 주요한 품질 관리 항목으로 하여 특허 번역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번역은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고 그 중요성 또한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권리 창출 및 보호와 활용을 위한 부수적인 서비스로 인식되어 왔다. 그 결과 앞서 서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듯이 심각한 품질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특허번역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구체적인 품질평가 기준을 정립하거나 경쟁력 있는 전문 특허번역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등의 실질적이고 실행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최효은 2015: 199). 해외의 경우 특허번역의 품질을 논한 자료들(Lyle 2012; Tsai 2014 등)을 간혹 볼 수 있으나 이들 역시 로컬라이제이션 또는 기술번역 분야에 특화된 기존의 평가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번역의 특징에 바탕을 둔 특허번역 품질평가 기준의 도출은 번역물의 품질 제고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한영 특허번역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있어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연구 방법의 다각화에 따라 본고의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특허번역 결과물을 대상으로 한 텍스트 분석 연구를 후속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실제 번역 평가의 사례 분석을 통해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본 연구 결과에 대해 설득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본고의 평가 기준이 실제 한영 특허번역의 평가나 전문 교육에 당장 적용 및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서 도출한 평가 기준을 더욱 정형화 및 구체화하고 그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수치화하여 평가 기준을 보완하고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실무에 적합한 품질평가 기준으로 발전한다면 향후 한영 특허번역의 평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번역 결과물의 평가뿐만 아니라 전문 특허번역사 교육



에 있어서도 이러한 평가 기준이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생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천우 (2014) ‘지식재산번역(IPT)의 위상 및 역할 정립’, 제1회 IP 번역 공개 포럼, 서울.
- 류상민, 김유철 (2015) 『연봉 1억 영문특허번역 가이드북』, 서울: 넥서스.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서울: 창비.
- 윤상원 (2014) 『실전으로 배우는 발명·특허』, 서울: 한빛아카데미.
- 전현주 (2008) 『번역 비평의 패러다임』, 서울: 한국학술정보.
- 정수정 (2014) 「독일어와 한국어 특허문서에 쓰이는 고정적 언어 표현에 대한 연구」, 『독일어문화권연구』 23: 359-81.
- 정연일, 주진국, 옴김 (2006) 『번역행위의 목적성』,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Christiane Nord (1997)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 Kinderhook: St. Jerome Publishing).
- 최승권 (2007) 「영어 특허문서 자동번역을 위한 특허번역패턴 연구」, 『번역학 연구』 8(1): 301-22.
- 최효은 (2015) 「영한/한영 전문 특허 번역 교육의 필요성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법률번역 전문가 과정의 특허 수업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6(1): 198-237.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0) 『지식재산번역 가이드라인』, 대전: 특허청.
- \_\_\_\_\_ (2011) 『지식재산번역 능력시험제도 도입방안 연구』, 대전: 특허청.
- \_\_\_\_\_ (2014)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현황 연구』, 대전: 특허청.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12) 『특허정보 대중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허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대전: 특허청.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BK21 번역부 자격검정팀 (2000) 「번역물 품질과 품질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통번역학연구』 12(4): 163-84.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9) ‘응용특화 한중영 자동번역 기술 개발’, 신성장동력 핵심기술 발표회, 서울.
- Burk, Dan L. and Reyman, Jessica (2014). ‘Patents as genre: A prospectus’, *Law & Literature* 26(2): 163-90.
- Byrne, Jody (2006) *Technical Translation: Usability Strategies for Translating Technical Documentation*, AA Dordrecht: Springer.
- \_\_\_\_\_ (2012) *Scientific and Technical Translation Explained: A Nuts and Bolts Guide for Beginners*, Manchester & Kinderhook: St. Jerome Publishing.
- Chesterman, Andrew (1997) *Memes of Transl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DuBay, William (2004) *The Principle of Readability*, CA: Impact Information.
- Galinski, Christian and Budin, Gerhard (1993) ‘New trends in translation-oriented terminology management’, in Sue Ellen Wright and Leland D. Wright, Jr. (eds) *Scientific and Technical Transl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09-15.
- Göpferich, Susanne (1998) *Interkulturelles Technical Writing: Fachliches adressatengerecht vermitteln*, Tübingen: Narr.
- Herman, Mark (1993) ‘Technical translation style: Clarity, concision, correctness’, in Sue Ellen Wright and Leland D. Wright, Jr. (eds) *Scientific and Technical Transl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1-20.
- Horguelin, Paul A. and Brunette, Louise (1998) *Pratique de la revisi n*. Quebec: Linguattech.
- Munday, Jeremy (2001/2008)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second edi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Olohan, Maeve (2015) *Scientific and Technical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Schubert, Klaus (2010) ‘Technical translation’, in Yves Gambier and Luc van

-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ume 1),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350-55.
- Tsai, Yvonne (2014) 'Quantitative analysis of patent translation',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21: 52-70.
- WIPO (2012) *Guidelines for the Translation of PCT Application Abstracts – Korean to English*, Geneva: WIPO.
- \_\_\_\_\_ (2014)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Geneva: WIPO.
- Wright, Sue Ellen (1993) 'The inappropriateness of the merely correct: Stylistic considerations in scientific and technical translation', in Sue Ellen Wright and Leland D. Wright, Jr. (eds) *Scientific and Technical Transl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69-86.
- Wright, Sue Ellen and Wright, Leland D. Jr. (1993) 'Editor's preface: Technical translation and the American translator', in Sue Ellen Wright and Leland D. Wright, Jr. (eds) *Scientific and Technical Transl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7.

[전자자료]

- Lyle, Ball (2012) 'Five Pillars of Success for IP Translations', IP Watchdog, 31 October.  
Available at  
<https://www.ipwatchdog.com/2012/10/31/five-pillars-of-success-for-ip-translations/id=29384/> (2016년 6월 13일 검색)
- Margetic, Emmanuel (2012) 'Upholding translation quality with highly specialized translators', TC World, August.  
Available at  
<http://www.tcworld.info/e-magazine/translation-and-localization/article/upholding-translation-quality-with-highly-specialized-translators/> (2016년 6월 13일 검색)
- Sneddon, Michael and Ruplinger, Heide (2011) 'The importance of good translatio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1 October.

Available at

<http://www.worldipreview.com/article/the-importance-of-good-translation>

(2016년 6월 13일 검색)

Wang, Lynn, Wei, Yuming, and Faulkner, York (2015) 'How not to get lost in patent translatio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16 December.

Available at

<http://www.worldipreview.com/contributed-article/pct-how-not-to-get-lost-in-patent-translation>

(2016년 6월 13일 검색)

WIPO (1994) 'General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Abstracts of Patent Documents'. Available at

<http://www.wipo.int/scit/en/standards/pdf/03-12-a.pdf> (2016년 6월 13일 검색)

\_\_\_\_\_ (2004) '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Policy, Law and Use'.

Available at <http://www.wipo.int/about-ip/en/iprm/> (2016년 6월 13일 검색)

[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http://endic.naver.com>

특허청 (2008) 『영·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대전: 특허청.

[참고 법령]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2014)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ninth edition.

Available at <http://www.uspto.gov/web/offices/pac/mpep/index.html> (2016년 6월 13일 검색)

[Abstract]

## **A Study on the Quality Assessment Criteria and Norms of Korean-English Patent Translation**

Choi, Hyo-eu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quality assessment criteria applicable to Korean-English patent transl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patent translation as well as Chesterman's (1997) expectancy and professional norms. For the purpose, the study reviewed patent-related literatures, guidelines from patent offices, and quality control processes adopted by patent translation service providers in Korea. As a result, it is suggested that quality assessment criteria for Korean-English patent translation be identified as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technical idea communicated through the ST, accurate translation of technical terms, correct style required for patent translation including correct grammar and characteristics of the genre of patent translation, and strict literal translation, i.e. no addition or omission. The criteria are confirmed from the perspective of Chesterman's (1997) expectancy norms set by 'norm authorities' of major patent offices as well as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and professional norms by major Korean-English patent translation service providers.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 also show professional Korean-English patent translators tend to be well aware of the expectancy norms and agree with those criteria. It is expected that the assessment criteria and the norms of Korean-English patent translation lay a foundation for improving quality of patent translation outcomes and, moreover, providing quality training programs.

▶ Key Words: patent translation, translation quality, translation evaluation, translation assessment,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TQA),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criteria, evaluation norms

최효은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cutedinojr@naver.com

관심분야: 특허번역, 과학기술번역, 기술번역

논문투고일: 2016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6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5일